

이 추록은 2024 『IMPACT(임팩트) 세법학 I·II』 제19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1. 임팩트 세법학 I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2-199	하 5	연결가능모법인의 연결가능법인에	연결가능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2. 임팩트 세법학 II 정오사항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2-10	하 6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176.4원/kg	다만, 2024년 8월 31일까지는 193원/kg
2-11	상 6	2024년 6월 30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 8		
	상 10		
	상 11		
3-92	상 12	다만, 2023년도에	다만, 2024년도에
	하 3	정하는 비율	정하는 비율.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를 말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및 연장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